

# 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88,424,684	8,652,741
일반회계	280,695,494	8,420,865
특별회계	7,729,190	231,876
기타특별회계	7,729,190	231,876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06,200	18,186
지하수관리특별회계	397,244	11,917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687,202	50,616
주차장특별회계	4,798,663	143,960
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160,372	4,811
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79,509	2,385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 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,188,28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·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 보조금 및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